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중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 성중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소양, 김진수, 송도호, 송아량, 여 명, 우형찬, 이석주, 이성배, 이승미, 이은주, 정지권, 정진철, 추승우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스마트폰 중독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
-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통안전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교통안전교육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
2.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
3.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<u>교통안전교육</u>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</u> <u>교통안전교육</u> -----.</p> <p>1. <u>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</u></p> <p>2. <u>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 사고 예방교육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